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2-15호

「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4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일컫는 ‘이해충돌’을 사전에 예방·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제정 및 시행(2022.5.19.)되었으며, 이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이 개정(2022.6.2.)되었음.

나.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개정된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에 따라 각 기관의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어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'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, 직무 관련 조언·자문 등의 제한, 가족 채용 제한,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' 등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내용 및 서식 삭제(안 제4조, 제4조의2~제4조의5, 제10조, 제15조, 별지 제1호~제4호, 제12호)
- 나.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0조의3의 '전가'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'전가(轉嫁)'로 한자 병행하여 표기(안 제10조의3)
- 다. '산하기관'을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로 구체적으로 명문화(안 제10조의3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1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koym9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6419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37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